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### 가. 제안이유

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 체육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명 변경
- 2) 조례의 입법목적 명확화(안 제1조)
- 3) “체육”활동의 범위 명확화 및 조문 정비(안 제2조)
- 4)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(안 제12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개정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기존의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 체육 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명 변경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가 강화되고, 이로 인해 과거에는 주로 생활체육 분야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체육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그에 필요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”로 변경하고 있음.
- 안 제1조(목적)는 근거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동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2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조의 명칭을 “생활체육의 육성”에서 “체육진흥 시책과 권장”으로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,
-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지원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. 특히, 제 9호를 신설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체육인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검토결과 근거법인 “국민체육진흥법”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각 개정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## 【관계법령】

### <국민체육진흥법>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